

지역사회 공유·협력 규정

제정 2022. 9. 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와 지역주민, 지방자치단체, 지역 대학, 지역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공유·협력 활동을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유·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 및 활동) ① 지역사회 공유·협력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학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.

② 지역사회 공유·협력 활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역사회 공유·협력에 관한 사항 : 지역 학생(초, 중, 고) 교육, 시민대상 평생교육, 대학 시설 개방, 지역사회 봉사 등
2. 지역대학 공유·협력에 관한 사항 : 교육협력(학점교류 등), 연구협력 등
3. 지방자치단체 공유·협력에 관한 사항 : 업무자문, 지자체사업 위수탁운영 협력 등
4. 지역 산업체 공유·협력에 관한 사항 : 공동연구, 기술지도, 창업지원 등
5. 지역내 기타 각종 기관들과의 공유·협력에 관한 사항

제3조(지역사회공유협력위원회) ① 지역사회 공유·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사회공유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교내·외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④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입학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중앙도서관장, 평생교육원장, LINC3.0사업단장, AISW중심대학사업단장, 창업지원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.

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사회 공유·협력 수요분석 및 연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공유·협력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공유·협력 활동 성과분석 및 개선(환류)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사회 공유·협력에 필요한 사항

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환류체계) 기획처장은 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지역사회 공유·협력 활동 분석 및 평가의 내용이 대학발전계획, 대학경영방침 및 부서업무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(2022. 9. 6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